

# 거치식예금약관

## 제1조(적용범위)

- ① 거치식예금(이하 '이 예금' 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고 거래를 시작할 때 맡긴 돈을 만기에 찾는 예금을 말한다.
-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 ③ 자유적립예금과 표지어음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한다.

## 제2조(지급시기)

이 예금은 약정한 만기일 이후 거래처가 청구할 때 지급한다. 다만, 거래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청구할 때는 만기일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이자)

- ① 이 예금이자 는 약정한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로 셈하여 만기 일 이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그러나,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월별로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② 만기일 후 지급청구할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만기후 이율로 셈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한다. <개정 01.10.1>
- ③ 만기일 전에 지급청구할 때에는 예금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 이율로 셈하여 지급하며 이미 지급한 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이자와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와의 차액을 정산하여 지급한다.
- ④ 이 예금중 변동금리를 적용하는 예금은 이율을 바꾼 때 바꾼 날부터 바꾼 이율로 셈하여 이자를 지급한다.

## 제4조(장기예금으로의 재계약과 이자)

- ① 기명식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처음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긴 예치기간의 예금으로 갱신할 때는 제3조 제3항에 상관없이 예금일부터 갱신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제3조 제1항의 이율로 셈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 ② 갱신한 예금을 갱신으로 변경된 만기일 전에 청구했을 때 그 이자는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다만, 갱신일부터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이 당초 약정한 예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당초 예금일부터 갱신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최초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율로 셈하여 지급한다. 또한, 이미 지급한 이자는 지급할 금액에서 뺀다.

### 제5조(무기명식 예금의 증서발급과 권리행사)

무기명식 예금은 무기명으로 예금증서를 발급하며, 거래처는 모든 권리행사를 이 증서로 한다.

### 제6조(무기명식 예금증서의 면책)

상호저축은행이 무기명식 예금증서의 소지인에게 지급(이자 포함)한 경우에는 그 소지인이 무권리자이어서 증서를 분실·도난당한 거래처등에게 손해가 생겨도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소지인이 무권리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조(세금우대종합통장 거래)

①이 예금 중에서 거래처가 개인인 정기예금·자유적립예금은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예금기간 : 1년 이상

2. 예치한도 : 세금우대종합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모든 거치식·적립식예금을 포함하여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

3. 가입기간 :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자

③거래처가 세금우대저축의 감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서면을 청구한 후 제2항제2호의 한도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④거래처가 가입한 세금우대저축자료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제출되며 상호저축은행은 거래처가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한 계약금액총액을 조회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총액의 세부내역을 조회할 때에는 거래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15.01.01>

### 제8조(비과세종합저축통장 거래)

①이 예금중 거래처가 개인인 경우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다.

②비과세종합저축통장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예금은 모든 금융기관의 비과세종합저축통장 원금합계액을 기준으로 관련 세법에서 정한 한도금액 이내이어야 한다.

③비과세종합저축은 명의변경 및 양수·도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은 가능하다.

④비과세종합저축이 한도초과로 입금(무통장 입금 및 타행송금 포함)이 되지 않아 자동이체미처리 등의 손해가 발생하여도 거래금융기관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자유적립예금특약

### 제1조(예금의 납입)

자유적립예금은 계약기간이내에서 1천원의 배수로 하여 납입할 금액을 거래처가 마음대로 정하여 납입할 수 있다.

### 제2조(이자)

자유적립예금은 매회부금마다 그 예금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예치기간에 따라 예금일 당시 영업점에 게시한 예치기간별 이율을 적용하여 월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만기 또는 해약시에 지급한다.

## 정기예금특약

### 제1조(이자계산방법)

정기예금의 이자계산방법은 거래처의 선택에 따라 단리식 또는 월 복리식으로 계산한다.

### 제2조(연단위 이자지급)

이자계산방법을 복리식으로 선택한 경우 만기일 도래 전이라도 거래처의 청구에 따라 연단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3조(이자지급방법의 변경)

- ①거래처가 이자지급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는 복리식을 단리식으로의 전환만 허용되며 이 경우 연단위 이자는 복리식으로 잔여 월단위 이자는 단리식으로 계산한다.
- ②거래처가 계약기간 내에서 미경과 기간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경과기간의 이자를 약정이율로 할인하여 미리 지급할 수 있다.

### 제4조(만기후이자의 계산방법)

정기예금의 만기후의 예치기간에 대하여는 단리식으로 이자를 계산한다.

### 제5조(분할지급)

- ①정기예금은 거래처의 요청이 있으면 최종지급을 포함하여 4회까지 나누어 지급할 수 있으며,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분할해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4회를 초과하여 분할해지 할 수 있다. 다만, 거래처와 약정에 의한 경우 1월이상 월단위로 하여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 ②제1항에 따라 병원비 지급 목적으로 4회를 초과하여 정기예금을 분할 해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08.11.>

1.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을 말한다)을 청구하여야 하며,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 이내로 분할해지하여야 한다.
2. 고객이 병원비 명목으로 사용할 병원계좌로 분할해지 금액을 바로 이체하여야 한다.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 특약

### 제1조(약관의 적용)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정기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함니다)거래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 및 『거치식 예금 약관』을 적용합니다.

### 제2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취급 금융기관입니다.

### 제3조(계약기간 및 자동 재예치)

- ①이 예금의 계약기간은 3개월 이상 3년내에서 저축은행과 고객이 별도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②이 예금의 만기 도래시 「최초 계약기간」단위로 자동 재예치 되며, 자동 재예치일이 은행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재예치 됩니다.

### 제4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제5조(적용이율 및 이자계산)

- ①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 또는 재예치일 현재 영업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차등 이율을 적용합니다.
- ②이 예금은 신규일 또는 자동 재예치일을 이율결정일로 하며, 해당일에 유효한 이율이 없는 경우 직전 유효 이율을 해당일의 이율로 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월의 말일을 해당일로 합니다.

### 제6조(이자지급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지급식으로 하며, 자동 재예치 시에는 약정된 이자를 씬하여 원금에 더한 금액을 재예치 합니다.

### 제7조(중도해지)

①중도해지를 하는 경우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일반정기예금의 기간별 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이 예금의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7호의 사유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중도해지이율을 적용합니다.

1. 가입자 사망
2. 해외이주
3. 천재지변
4. 퇴직
5. 폐업
6. 3개월 이상의 입원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7. 저축 취급기관의 영업정지·파산
8. 의무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해지
9.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만기일 도래에 따른 해지
10. 신탁보수 취득

③이 예금의 만기이전에 특별중도해지 시 적용되는 특별중도해지이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 이후 예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이때 약정이율이라 함은 신규일 또는 최종 재예치일의 기간별로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2항 제10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입당시 약정이율을 적용합니다.

1. 가입기간 6개월미만 : 가입당시 3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2. 가입기간 6개월이상 1년미만 : 가입당시 6개월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3. 가입기간 1년이상 2년미만 : 가입당시 1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4. 가입기간 2년이상 3년미만 : 가입당시 2년제 이 예금의 약정이율

#### **제8조(분할지급)**

①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별로 예치 기간 중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하며, 자동 재예치된 경우에는 각 재예치 기간 마다 만기를 포함하여 3회 이내에서 분할해지가 가능합니다.

②예금 신규 당일에는 분할지급 할 수 없습니다.

#### **제9조(기타)**

①이 예금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 설정 및 담보제공, 지급정지, 상계 등은 불가합니다.

②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정기예금 업무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 표지어음특약

## 제1조(어음의 발행 및 보관)

표지어음은 표지어음보관통장을 발행교부하며, 어음실물발행은 생략한다. 다만, 자금중개주식회사를 통하여 매출(상호저축은행중앙회가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에 한함)하는 경우 또는 어음의 만기 1영업일 전에는 어음실물을 교부할 수 있다.

## 제2조(원천징수)

표지어음의 할인액에 대한 세금은 어음을 교부할 때, 만기상환시 또는 중도상환시에 원천징수한다.

## 제3조(지급)

- ①표지어음은 지급기일에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제시한 때 어음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 ②거래처가 표지어음을 보관하고 지급기일까지 인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급기일에 거래처가 사전에 지정한 계좌에 결제대전을 입금한다.

## 제4조(지급기일 경과후 이자)

표지어음의 지급기일 경과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지급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지급기일전 지급)

표지어음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일전에도 지급한다. 이때는 원금에 대하여 중도해지이율로 계산한 이자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원금과 함께 지급한다.

## 제6조(매매·양도 등)

상호저축은행에 보관된 표지어음은 상호저축은행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할 수 있다.

## 제7조(적용법률)

표지어음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어음법을 적용한다.